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칭기스칸 증권투자신탁[주식]

- 변경 사항: ①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)
 ② 제1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 ④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 ⑤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: 2024. 7. 24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 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</u> 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 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</u> <u>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u>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 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 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 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 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 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
요약정보

-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 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</u> <u>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%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 자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위 험, 시장위험 등에 따른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 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집합투자 기구 재산의 60%이상을 국 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, 시장위험 등 에 따른 기타 거시경제지표 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 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
---	--	---	--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		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주시기 바랍니다.
투자비용	제 16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기 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26. 기준</u>
		-	<u>2024. 5. 31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16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4. 6. 26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30. 기준</u>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 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</u> <u>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 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 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투자금액 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 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 니합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 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</u> <u>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 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 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</u>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투자금액 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 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 니합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 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 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 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
		<u>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 년 경과내역 삭 제	<u>책임운용역 : 이양병</u> <u>(2017.7.27~2020.7.8)</u>	<u><삭 제>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 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 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 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 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 호하지</u> 않습니다. (생략)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 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 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 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 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(생략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위험 가. 일반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 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 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따 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 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 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 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

		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	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	표준편차 : 16.69% 〈신 설〉 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2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<u>표준편차</u>	<u>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 : 32.38%</u> - 위험등급 변경 내역 : <u>2024.7.24 :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“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”에서 “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” 기준으로 변경</u> 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1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<u>위험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 사용)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〈신 설〉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<u>〈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〉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 16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기준으로 기재	- -	<u>2024. 6. 26. 기준</u> <u>2024. 5. 31.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200만원</u>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500만원</u>

		(공적연금소득 제외) 1,200 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 능 (단, 23.1.1 이후 연금수 령하는 분부터 적용)	(공적연금소득 제외) 1,500 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 능 (단, 24.1.1 이후 연금수 령하는 분부터 적용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제 16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2024. 6. 26. 기준
2. 연도별 설정 및 환 매 현황	제 16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2024. 6. 26. 기준
3. 집합투자기구의 운 용실적	제 16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2024. 6. 26. 기준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4. 6. 30. 기준
가. 회사개요	회사연혁 추가	-	2022.11 종합자산운용사 전 환
1.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제 25 기(2022.12.31) 제 24 기(2021.12.31)	제 26 기(2023.12.31) 제 25 기(2022.12.31)
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4. 6. 30. 기준
라. 운용자산 규모			